

“보육정보센터 나눔 캠페인” 협약서

보육정보센터(이하 “기부자”라 한다)와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이하 “기부처”라 한다)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협력하여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아래와 같이 나눔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기부자”와 “기부처” 양 당사자는 연합모금을 통해 지역 사회 내 보육정보센터의 나눔 문화를 선도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업무 제휴의 범위) “기부자”와 “기부처”는 각자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제1조의 목적에 부응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

《보육정보센터가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에게》

1. “기부자”는 사업 내용을 안내하고 자율적인 나눔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2. “기부자”는 교육 진행 시 접수처에 모금함을 비치하여 교육 대상자들이 모금 활동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자율적인 모금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안내한다.
3. “기부자”는 조성된 기부금을 “기부처”의 후원계좌에 기부한다.
4. “기부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지원되는 모금함 및 물품 관리에 협조한다.

※ 협약체결보육정보센터 : 중앙보육정보센터, 서울특별시보육정보센터, 대구광역시보육정보센터, 광주광역시보육정보센터, 대전광역시보육정보센터, 울산광역시보육정보센터, 충청북도보육정보센터, 전라남도보육정보센터, 경상북도보육정보센터, 경상남도보육정보센터, 서울특별시구로구보육정보센터, 서울특별시중구보육정보센터, 서울특별시중랑구보육정보센터, 경기도광명시보육정보센터, 경기도화성시보육정보센터, 충남천안시보육정보센터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이 보육정보센터에게》

1. “기부처”는 조성된 기부금 전액을 “기부자”가 지정한 복지 사업에 사용한다.
2. “기부처”는 연 1회 “기부자”에게 기부금액을 통보하며, 기부금 확인서를 발급한다.
3. “기부처”는 “기부자”에게 모금함 및 관련 물품을 제공한다.
4. “기부처”는 내규 범위 내 위 사항을 홍보 및 게시에 노력한다.

제3조(기타사항) 기타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상호 협력하여 결정한다.

보육정보센터와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은
아름다운 파트너가 되어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며,
협약서 사항을 소중히 지켜나갈 것을 약속합니다.

2013년 10월 08일

“기부자” 보육정보센터

중앙센터 대표 센터장 강인구

강 인 구

“기부처”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

상임이사 정영진

정영진

시·도센터 대표 센터장 이남정

이 남 정

시·군·구센터 대표 센터장 허미란

허미란